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5년도 1/4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5. 3. 26.)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준비 TF팀’ 을 노사 합동으로 구성한다.

2025. 3. 26.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원명희

원명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5년도 2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5. 6. 25.)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해당 연도에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차일수에 1일을 더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을 얻어 규정을 개정한 후부터 시행한다.
2.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직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한다.
3.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차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차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보상비 지급한도는 10일로 하고 추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5년도 3분기 노사한마음협의회(2025. 9. 30.)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단체협약 제40조(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체협약 제40조(통상임금)>

① 공사의 통상임금 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통상임금 산정항목
항 목	기본급, 운영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운전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 안전수당, 안전관리수당, 위생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위험근무수당, 생활임금, 명절휴가비, 자체평가급 최소지급액(75%), 업무대행수당

② 삭제<2017.11.16.>

③ 변경된 통상임금은 2024. 12. 19. 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공사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한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비율, 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여 정한다.

2025. 9. 30.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수 창

서명 이 수 창

부 천 도 시 공 사

사 장 원 명 희

서명 원 명 희

[노사합의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은 2025년도 4분기노사한마음협의회(2025. 12. 2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2013. 3. 22. 체결한 노사합의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기존	수정
노사합의서[2013. 3. 22.] 1. 제2차 직군통합 세부내용 ① 2012년도 3/4분기 노사합의서(2012. 11. 23.)에 따라 일반직 9급으로 전환함 ② 재직기간은 종전 직급에서의 재직기간을 합산하며, 직군통합 이전 작성된 모든 인사관리 사항은 통합 이후에도 승계되어 유효함 ③ 전환 대상자의 인정 경력은 1)우리공단에서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며, 2)병역법에 의한 군의 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④ 일반직 9급 전환 이후 48세에 도달한 다음 해 1월 1일자로 전직 발령에 이의가 없으며, 전직 발령을 거부하는 경우 당연 퇴직함	노사합의서[2013. 3. 22.] 1. 제2차 직군통합 세부내용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④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일반직 9급 전환 이후 48세에 도달한 다음 해 1월 1일자로 전직 발령한다. 단, 본인이 기존 체육 강사 직무 지속을 원하는 경우 ‘업무직’ 직렬로 변경한다.

2. 노사협의회 운영세칙 제11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기존	수정
노사협의회 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촉된 노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촉한 자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퇴직 또는 조합탈퇴시는 해당일의 다음 날로부터 위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노사협의회 운영세칙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촉된 노사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촉한 자가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현행 유지 ③ 현행 유지

2025. 12. 29.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이수창

서명 이수창

부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만

서명 이정만

